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동기	820821-*****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종류	상 호		보험종류				납입금액 계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보장성	삼성생명보험 (주)		무)VIP정기보험				1,129,050
	104-81-26***		6604754510034		820821-*****	이동기	
보장성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무배당계속받는암보험 (Hi1404)1?				468,000
	102-81-32***		L01435293645		491120-*****	김경숙	
보장성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무배당퍼펙트N종합보험(Hi1404)				916,900
	102-81-32***		L01435293652		491120-*****	김경숙	
보장성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애니카 다이렉트(개인용)				456,770
	202-81-45***		11557682810000		820821-*****	이동기	
인별합계금액			2,970,720				

1.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나이요건 제한 있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2.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연100만원)

일련번호 : 20160128-36190670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명식	460128-*****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종류	상 호		보험종류				납입금액 계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보장성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무배당삼성화재운전보험나만의				150,000
	202-81-45***		51206479930000		460128-*****	이명식	
보장성	라이나생명보험 (주)		무배당실버보험				21,440
	104-81-85***		8087383718		460128-*****	이명식	
보장성	라이나생명보험 (주)		무배당실버플러스보험				76,950
	104-81-85***		1237861018		460128-*****	이명식	
보장성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하이카 개인용				320,710
	102-81-32***		M2015095520200000		460128-*****	이명식	
보장성	한화손해보험 (주)		한화 다이렉트 개인용				132,750
	116-81-46***		CA20149404448000		790830-*****	최우석	

1.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나이요건 제한 있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2.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연100만원)

일련번호 : 20160128-36190670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명식	460128-*****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종류	상 호		보험종류				납입금액 계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보장성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		(무) 다보장3				436,030
	201-84-01***		13192381		460128-*****	이명식	
인별합계금액			1,137,880				

1.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나이요건 제한 있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2.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연100만원)

일련번호 : 20160128-36190670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소연	820417-*****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종류	상 호		보험종류				납입금액 계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보장성	흥국생명보험 (주)		(무)흥국우리아이플러스보장보험				434,250
	104-81-18***		8342883200002		131214-*****	이준영	
보장성	흥국생명보험 (주)		(무)흥국우리아이플러스보장보험				434,550
	104-81-18***		8342883200001		150919-*****	이다영	
보장성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100세건강파트너보험(0904.2)				827,820
	202-81-45***		50905836700000		820417-*****	김소연	
보장성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무배당굿앤굿어린이CI보험 (Hi130)				106,393
	102-81-32***		L01312983718		131214-*****	이준영	
	820417-*****	김소연					
보장성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무배당굿앤굿어린이CI보험 (Hi150)				113,410
	102-81-32***		L01521690428		131214-*****	이준영	

1.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나이요건 제한 있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2.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연100만원)

일련번호 : 20160128-36190670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소연	820417-*****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종류	상 호		보험종류				납입금액 계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보장성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무배당굿앤굿어린이CI보험 (Hi150)				65,150
	102-81-32***		L01512531667		131214-*****	이준영	
보장성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무배당굿앤굿어린이CI보험 (Hi150)				198,420
	102-81-32***		L01521687456		150919-*****	이다영	
	820417-*****	김소연					
보장성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애니카 다이렉트(개인용)				712,330
	202-81-45***		11506526550000		820821-*****	이동기	
보장성	흥국화재해상보험 (주)		파워라이프통합보험(1509)				133,000
	102-81-07***		41522126270000		820417-*****	김소연	
보장성	흥국화재해상보험 (주)		프리미엄행복보험(1204)				259,160
	102-81-07***		41204084080000		820417-*****	김소연	

1.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나이요건 제한 있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2.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연100만원)

일련번호 : 20160128-36190670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소연	820417-*****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종류	상 호	보험종류		납입금액 계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인별합계금액		3,284,483		

1.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나이요건 제한 있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2.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연100만원)

일련번호 : 20160128-36190670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동기	820821-*****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9-96-05*	김*****	일반	63,100
8-96-03*	남*****	일반	18,000
9-01-31*	제***	일반	3,2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84,3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84,300

1.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2.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난임시술비(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일련번호 : 20160128-36190670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명식	460128-*****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1-06-82*	대***	일반	248,870
0-82-00*	연****	일반	5,435,430
0-90-03*	우*****	일반	1,500
1-52-10*	윤**	일반	70,400
1-82-02*	(*****	일반	1,074,62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6,830,82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6,830,820

1.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2.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난임시술비(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일련번호 : 20160128-36190670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소연	820417-*****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7-90-45*	경*****	일반	30,900
9-96-05*	김*****	일반	16,700
9-91-96*	더*****	일반	4,902,930
8-90-44*	리*****	일반	35,200
0-22-82*	움*****	일반	340,000
8-96-02*	장****	일반	14,0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5,339,73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5,339,730

1.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2.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난임시술비(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일련번호 : 20160128-36190670



국세청

전자문서(pdf파일)로 발급된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입니다. 전자문서는 출력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문서 진본여부 확인은 홈페이지(www.hometax.go.kr) 자료실을 참고 바랍니다.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준영	131214-*****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8-90-12*	김*****	일반	3,200
8-20-58*	사***	일반	18,400
9-91-44*	아*****	일반	43,800
8-25-62*	예***	일반	7,900
8-96-03*	윤*****	일반	22,800
5-11-37*	정***	일반	1,190
8-18-80*	중*****	일반	1,400
8-01-19*	팜***	일반	13,600
8-82-00*	(*****	일반	63,7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175,99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175,990

1.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2.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난임시술비(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일련번호 : 20160128-36190670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교육비]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동기	820821-*****

■ 교육비 지출내역

(단위:원)

교육비종류	학교명	사업자번호	지출금액 계
대학원	***대학원	**5-82-04***	7,444,000
인별합계금액			7,444,000

1. (아이사랑카드)가 기재된 자료는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아이사랑카드 외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기 바람
2.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과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포함)을 위해 실제 지출한 교육비 부담액
3. 공제대상금액 한도 : 근로자 본인·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연 300만원), 대학생(연 900만원),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일련번호 : 20160128-36190670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교육비]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준영	131214-*****

■ 교육비 지출내역

(단위:원)

교육비종류	학교명	사업자번호	지출금액 계
보육시설	***보육시설	**8-80-06***	75,000
인별합계금액			75,000

1. (아이사랑카드)가 기재된 자료는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아이사랑카드 외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기 바람
2.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과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포함)을 위해 실제 지출한 교육비 부담액
3. 공제대상금액 한도 : 근로자 본인·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연 300만원), 대학생(연 900만원),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일련번호 : 20160128-36190670



2015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신용카드]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동기	820821-*****

■ 2013년도 사용액계

(단위:원)

일반	12,735,919	인별합계금액	14,658,289
전통시장	1,731,020		
대중교통	191,350		

■ 2014년도 사용액계

(단위:원)

일반	15,135,865	인별합계금액	15,472,239
전통시장	10,224		
대중교통	326,150		

■ 2015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조회대상기간		선택한 기간의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사용액
인별 상반기 전체 사용액	일반	1,564,352	1,564,352
	전통시장	2,000	2,000
	대중교통	262,900	262,900
인별 하반기 전체 사용액	일반	15,485,478	15,485,478
	전통시장	7,450	7,450
	대중교통	669,060	669,060
인별 연간 전체 사용액	일반	17,049,830	17,049,830
	전통시장	9,450	9,450
	대중교통	931,960	931,960
인별합계금액		17,991,240	17,991,240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60128-36190670



2015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신용카드]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동기	820821-*****

■ 2015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0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중교통	4,200
104-86-56***	하나카드 주식회사	일반	13,558,216
104-86-56***	하나카드 주식회사	전통시장	5,000
104-86-56***	하나카드 주식회사	대중교통	802,660
101-86-61***	(주) KB국민카드	일반	3,491,614
101-86-61***	(주) KB국민카드	전통시장	4,450
101-86-61***	(주) KB국민카드	대중교통	125,100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60128-36190670



2015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신용카드]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명식	460128-*****

■ 2015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조회대상기간		선택한 기간의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사용액
인별 상반기 전체 사용액	일반	12,694,300	12,694,300
	전통시장	173,960	173,960
	대중교통	224,650	224,650
인별 하반기 전체 사용액	일반	8,450,410	8,450,410
	전통시장	0	0
	대중교통	10,300	10,300
인별 연간 전체 사용액	일반	21,144,710	21,144,710
	전통시장	173,960	173,960
	대중교통	234,950	234,950
인별합계금액		21,553,620	21,553,620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60128-36190670



2015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신용카드]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명식	460128-*****

■ 2015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
214-81-37***	비씨카드 (주)	일반	19,799,990
214-81-37***	비씨카드 (주)	전통시장	148,960
214-81-37***	비씨카드 (주)	대중교통	224,650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1,344,720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전통시장	25,000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중교통	10,300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60128-36190670



2015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신용카드]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소연	820417-*****

■ 2015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조회대상기간		선택한 기간의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사용액
인별 상반기 전체 사용액	일반	4,291,508	4,291,508
	전통시장	0	0
	대중교통	122,200	122,200
인별 하반기 전체 사용액	일반	4,975,597	4,975,597
	전통시장	18,000	18,000
	대중교통	87,650	87,650
인별 연간 전체 사용액	일반	9,267,105	9,267,105
	전통시장	18,000	18,000
	대중교통	209,850	209,850
인별합계금액		9,494,955	9,494,955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60128-36190670



2015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신용카드]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소연	820417-*****

■ 2015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
214-81-37***	비씨카드 (주)	일반	5,442,499
214-81-37***	비씨카드 (주)	전통시장	18,000
214-81-37***	비씨카드 (주)	대중교통	207,450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0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중교통	0
211-87-21***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일반	0
104-86-56***	하나카드 주식회사	일반	3,824,606
104-86-56***	하나카드 주식회사	전통시장	0
104-86-56***	하나카드 주식회사	대중교통	2,400
101-86-61***	(주) KB국민카드	일반	0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60128-36190670



2015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등]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동기	820821-*****

■ 2013년도 사용액계

(단위:원)

일반	198,320	인별합계금액	198,320
전통시장	0		
대중교통	0		

■ 2014년도 사용액계

(단위:원)

일반	306,673	인별합계금액	306,673
전통시장	0		
대중교통	0		

■ 2015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조회대상기간		선택한 기간의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사용액
인별 상반기 전체 사용액	일반	334,694	334,694
	전통시장	0	0
	대중교통	0	0
인별 하반기 전체 사용액	일반	134,829	134,829
	전통시장	0	0
	대중교통	0	0
인별 연간 전체 사용액	일반	469,523	469,523
	전통시장	0	0
	대중교통	0	0
인별합계금액		469,523	469,523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60128-36190670



2015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등]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동기	820821-*****

■ 2015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상호	종류	공제대상금액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175,083
101-86-61***	(주) KB국민카드	일반	294,440
201-81-68***	(주) 국민은행	일반	0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60128-36190670

2015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등]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소연	820417-*****

■ 2015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조회대상기간		선택한 기간의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사용액
인별 상반기 전체 사용액	일반	963,665	963,665
	전통시장	3,500	3,500
	대중교통	0	0
인별 하반기 전체 사용액	일반	367,350	367,350
	전통시장	0	0
	대중교통	0	0
인별 연간 전체 사용액	일반	1,331,015	1,331,015
	전통시장	3,500	3,500
	대중교통	0	0
인별합계금액		1,334,515	1,334,515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60128-36190670



2015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등]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김소연	820417-*****

■ 2015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상호	종류	공제대상금액
214-81-37***	비씨카드 (주)	일반	945,785
214-81-37***	비씨카드 (주)	전통시장	3,500
101-86-61***	(주) KB국민카드	일반	385,230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60128-36190670



2015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동기	820821-*****

■ 2013년도 사용액계

(단위:원)

일반	434,231	인별합계금액	434,231
전통시장	0		
대중교통	0		

■ 2014년도 사용액계

(단위:원)

일반	3,344,785	인별합계금액	3,344,785
전통시장	0		
대중교통	0		

■ 2015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조회대상기간		선택한 기간의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사용액
인별 상반기 전체 사용액	일반	1,881,991	1,881,991
	전통시장	0	0
	대중교통	7,900	7,900
인별 하반기 전체 사용액	일반	11,775,780	11,775,780
	전통시장	0	0
	대중교통	0	0
인별 연간 전체 사용액	일반	13,657,771	13,657,771
	전통시장	0	0
	대중교통	7,900	7,900
인별합계금액		13,665,671	13,665,671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60128-36190670

2015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동기	820821-*****

■ 2015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현금영수증	종류	월별 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136,090	292,830	391,541	445,720	13,657,771
		292,000	323,810	183,510	10,487,200	
		903,910	74,730	96,810	29,620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거래	0	0	0	0	7,900
		0	7,900	0	0	
		0	0	0	0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60128-36190670



2015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명식	460128-*****

■ 2015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조회대상기간		선택한 기간의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사용액
인별 상반기 전체 사용액	일반	719,470	719,470
	전통시장	0	0
	대중교통	0	0
인별 하반기 전체 사용액	일반	42,500	42,500
	전통시장	0	0
	대중교통	0	0
인별 연간 전체 사용액	일반	761,970	761,970
	전통시장	0	0
	대중교통	0	0
인별합계금액		761,970	761,970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60128-36190670



국세청

전자문서(pdf파일)로 발급된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입니다. 전자문서는 출력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문서 진본여부 확인은 홈페이지(www.hometax.go.kr) 자료실을 참고 바랍니다.

2015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명식	460128-*****

■ 2015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현금영수증	종류	월별 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168,590	132,970	138,270	139,150	761,970
		81,050	59,440	21,250	21,250	
		0	0	0	0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60128-36190670



2015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소연	820417-*****

■ 2015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조회대상기간		선택한 기간의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사용액
인별 상반기 전체 사용액	일반	1,194,083	1,194,083
	전통시장	0	0
	대중교통	0	0
인별 하반기 전체 사용액	일반	235,770	235,770
	전통시장	12,600	12,600
	대중교통	0	0
인별 연간 전체 사용액	일반	1,429,853	1,429,853
	전통시장	12,600	12,600
	대중교통	0	0
인별합계금액		1,442,453	1,442,453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60128-36190670



2015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김소연	820417-*****

■ 2015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현금영수증	종류	월별 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257,890	192,081	130,060	152,152	1,429,853
		249,610	212,290	169,920	22,150	
		13,700	30,000	0	0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거래	0	0	0	0	12,600
		0	0	12,600	0	
		0	0	0	0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60128-36190670



2015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취급기관별)내역 [주택마련저축]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동기	820821-*****

■ 주택마련저축 납입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저축구분	저축명	가입일자	납입금액 계
(주) 국민은행 (201-81-68***)	07560704034640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2013-10-01	2,110,000
합 계					2,110,000

1. 공제대상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12.31.현재)가 본인명의로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의 40% ('14.12.31. 이전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가능)
- ※ '09.12.31. 이전 청약저축 가입자(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제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
-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저축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연도부터 공제 가능
- ※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2.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3. 재외국민, 외국인은 소득공제 대상 아님

일련번호 : 20160128-36190670